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「관세법」이 개정('20.12)됨에 따라,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%를 감경함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면세점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1. 2. 24. ~ 3. 3.

3) 행정규제 : 국무조정실 협의 결과, 규제심사 대상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8조의2제1항 중 “법 제176조의2제4항”을 “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8조의2(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) ①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수수료(이하 이 조에서 “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”라 한다)는 제6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	제68조의2(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) ① <u>법 제176조의2제4항 본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③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.
③ (생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